

관련 법 규

○ 中小企業 基本法(第7條)

第7條(地方自治團體의 施策)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에 관한 國家施策에 準하여 필요한 施策을 請究하여야 한다.

○ 地方自治法(第133條)

第133條(財產 및 基金의 設置) ① 地方自治團體는 施行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 資金을 積立하거나 또는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財產의 보유, 資金의 積立 및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③ 第1項에서 “財產”이라 함은 現金이외의 모든 財產的 價值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5. 27.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증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1993년 5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가. 제안이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93. 1. 1 부과분부터 적용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 사용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차장 시설과 관계없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이 혼합 편성되어 현계업무 처리 혼란 및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여 세입사

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부칙 제3항(경과조치)으로 신설함.

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 결정분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안 부칙 제3조 제1호)

나. 1992년도 징수 결정분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안 부칙 제3조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檢討한 바, 1992年 10月 29日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稅入을 1993年 1月 1日부터 適用하도록 條例를 制定하였으나 過年度分에 대하여는 一般會計 稅入으로 편성되어駐車場設置目的과는 다른 一般豫算으로 執行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附則 제3항, 1호, 2호를 新設하여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과년도 滯納額 整理分에 대하여 特別會計, 歲入 施行日字를 정하여 處理하므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혼동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滯納額에 대한 稅入所管을 一元化할 수 있으며 또한 特別會計稅入이 增額되므로 駐車場施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166
번 호	

제출년월일 : 1993. 5. 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93. 1. 1 부과분부터 적용하여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 사용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차장시설과 관계없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이 혼합 편성되어 현계업무 처리혼란 및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여 세입사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아래 규정을 부칙 제3항(경과조치)에 신설하고자 함.

- 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 나.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21조의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p> <p>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p> <p>③(신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1991년 12월 31일까지 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p> <p>2. 1992년도 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심사
보고서

1993. 5. 27.

1. 실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증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1993년 5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건축법규가 종전에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시건축조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19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거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구 실정에 맞도록 구 건축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위원수 구성 9~50인 (안 제4조 제1항)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1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시행 (안 제14조)
-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함. (안 제17조)
 - 1.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립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